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_엠보스의료기

1. 계약기간

- ① 임대품목 :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3 준수사항

-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③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연한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연한기한 내에서 정해진 수량만큼 구입할 수 있다.
 - 연한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이라도 미끄럼 방지용품과 자세변환용구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 기간 중 최대 급여 가능 개수(미끄럼 방지 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액 · 매트 5개, 자세변환용구 5개)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다.
 - 구입제품의 연한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연한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다만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4 계약시 기본의무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 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한도액 160만원) 으로 한다.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②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연 이용한도	구분	공단부담(%)	본인부담금(%)	내역
1,600,000원	일반	85%	15%	100% 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이 부담함
	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	94% ~91%	6%~9%	100% 중 91%~94%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9%~6%는 본인이 부담함
	기초수급자	100%	0%	100% 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 ③ 제품에 대한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다음을 준수한다.
 -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 · 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권리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복지용구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복지용구 사용 및 종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대여제품시)
2. 제품사용에 있어서 제품의 심각한 파손 및 타인에게 양도한 할 경우 (대여제품시)
3. 제품 소독을 실시 할 경우 아무 이유없이 소독실시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에 (대여제품시)